

골프문화전략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골프문화전략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골프문화의 선진화와 과학화 및 대중화에 관한 관련지식 및 기술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, 산학협력, 전문인력양성, 장비활용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골프의 전문화를 실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내 및 국제 골프스포츠에 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
2. 학술세미나 개최(년 1회)
3. 연구소 논문집 발간(년 1회)
4. 관련 전공서적 발간
5.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
6. 기타 본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 5 조 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인문사회분과, 자연과학분과, 산업분과를 둘 수 있다.

② 각 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인문사회분과 : 체육 및 골프와 관련된 역사, 사회학, 행정관리, 교육학, 심리학 등과 그와 관련된 제반학문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.
2. 자연과학분과 : 체육 및 골프와 관련된 생리학, 역학, 트레이닝, 운동처방, 의학 등과 그와 관련된 제반학문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.
3. 산 업 분 과 : 체육 및 골프와 관련된 경영, 마케팅, 산학협력, 인적자원개발 등과 그와 관련된 제반학문 및 엘리트체육, 학교체육, 생활체육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.

제 3 장 임원 및 연구원

제 6 조 (임원) 본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소장 : 1명
2. 부소장 : 1명
3. 간사 : 1명
4. 감사 : 1명
5. 분과장 : 3명

제 7 조 (임원의 임무, 임명, 임기)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,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③ 간사는 연구소의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 사무를 관장하고,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년 1회 이상 연구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⑤ 분과장은 각 분과의 연구사업과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,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8 조 (연구원)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원, 박사후연구원(Post-Doc.),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“연구원임용규정”에 따른다.

제 4 장 위 원 회

- 제 9 조 (운영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맡고, 부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기타 위원은 간사, 감사, 각 분과장 등 임원과 연구원, 교내외 전문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 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규정의 개정
 - 2. 연구소의 해산
 -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 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
 -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- 3. 임원 및 연구원 선출
 - 4. 예산 및 결산
 -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 (각종 위원회) 연구소의 전문분야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 5 장 운영 및 재정

- 제11조 (재정)**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1. 각종 지원금
 - 2. 기업/체육민간 및 관련단체의 보조금
 - 3. 정부 및 외부수탁과제 연구지원금
 - 4. 기타 연구소 사업 수익금
- ②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2조 (재원사용) 재원은 학술지 발간, 학술발표회 개최 및 자료 보급, 출판경비 등으로 사용하며, 특별한 경우 체육 및 관련단체의 지원, 주요행사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 6 장 보고 및 서류의 비치 등

제13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조변경, 개정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14조 (서류 및 장부의 비치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
2. 연구센터 조직 및 소속 연구원의 명부
3. 회계 관계 서류
4. 연구 기자재를 포함한 재산목록
5. 연구과제 목록

제15조 (비밀엄수의 의무) 본 연구소의 임원이나 연구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 (재산의 귀속) 연구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대학교에 귀속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17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18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